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2268-1	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 KSF2268-1 : 5.3절 시험체 양생관련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F2268-1 : ISO 3008-1:2019의 Annex A2.2를 인용하여 5.3절의 시험체 및 지지구조의 양생기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수정, 8.2절의 열전대 개수와 관련된 문구수정, 9절 성적서의 방화문의 복사열량 값은 선택사항으로 수정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4월 0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김혜지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464, E-MAIL: hyejiki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13호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1호, 2020. 1. 2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2월 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 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는 화학물질의 실제 노출환경을 반영하여 실시하거나 위해성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최악 노출상황을 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130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정죽리 측정소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정죽리 측정소 증축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1032, 1034-5	25,130	1,623.5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10.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과학연구소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488번길 160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87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131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정죽리 민원안내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정죽리 민원안내실 신축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1048, 1048-1	4,082	392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12.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과학연구소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488번길 160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87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